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
2020. 11. 26(목) 10:00

제225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
조례안
(복지가족국 소관)



복 지 건 설 위 원 회
전문위원 추병수

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044호
- 나. 제 출 자 : 운영회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0. 11. 17.
- 라. 회부일자 : 2020. 11. 17.

2. 제안이유

금천구 영유아의 연령별 발달 단계에 맞는 관련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정의와 적용범위(안 제2조부터 제3조)
- 나. 기본 계획의 수립, 영유아 발달지원사업(안 제5조부터 제7조)
- 다. 관련 기관·단체와의 협력사항(안 제8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
 - 「아동복지법」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제35조(건강한 심신의 보존)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예산조치
- 다. 입법예고 : 2020. 11. 17. ~ 11. 23.

5. 검토의견

가. 조례안 제정 필요성

본 조례안은 금천구 영유아의 연령별 발달 단계에 맞는 관련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의원 발의 되었으며 총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나. 주요 내용

- 조례의 정의와 적용범위(안 제2조부터 제3조)
- 기본 계획의 수립, 영유아 발달지원사업(안 제5조부터 제7조)
- 관련 기관·단체와의 협력사항(안 제8조)

다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영유아의 연령별 발달단계에 심리·정서적 이상 유무를 검사하여 발달 지연 아동과 보호자에 대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함.
- 영유아의 발달장애 조기 발견 및 재활사업과 연계하고, 영유아의 장애 유병률을 낮추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조례제정에는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관계법령

□ 아동복지법

[시행 2020. 10. 8.] [법률 제17206호, 2020. 4. 7., 일부개정]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·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,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,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 <신설 2016. 3. 22.>

제35조(건강한 심신의 보존)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.

1. 신체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
2. 자살 및 각종 중독의 예방 등 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
3.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
4. 비만 방지 등 체력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신체적·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아동이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다만, 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·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